

제2700호
2019. 12. 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9-96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일부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구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조문 신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5항 신설

: 무인민원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수수료 면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3396-4783, FAX: 02-3396-8647, E-mail: aldslw@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② 삭제(1997.1.18.)</p> <p>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 설〉</p>	<p><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p>